



신입 유생들을 위한

2024 인권 안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여 조심하는 성균인

마땅히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며 행동하는 성균인

예절을 지키며 풍류를 즐기는 성균인

모든 인권의 동등함과 소중함을 아는 성균인,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줄 아는 성균인

지은이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SURE! 인권복지국

검수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To read an English manual, please scan this QR code.

목차

서론 들어가며

1	인(仁) ······	4
	유생들의 인권 매뉴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여 조심하는 성균인	
2	의(義) ······	7
	성폭력 없는 성균관을 위한 유생들의 한 걸음 마땅히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며 행동하는 성균인	
3	예(禮) ······	13
	유생들의 즐거운 주도 문화 예절을 지키며 풍류를 즐기는 성균인	
4	지(智) ······	17
	유생들의 바람직한 교우관계와 안전한 학교생활 모든 인권의 동등함과 소중함을 아는 성균인,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줄 아는 성균인	

서론

들어가며

성균관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유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 매뉴얼은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한 몇 가지 지침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은 성균관대학교의 일원으로서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 학번, 성별, 출신 지역, 종교관 등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지양하며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명심합니다. 대학 행사의 모든 활동에서 각자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 행사는 활발한 교류와 친목도모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타인을 자율적 주체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균관대학교의 구성원 모두 인권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신입생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가 서로를 평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존중 받는 학생 사회를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인

仁

유생들의 인권 매뉴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여 조심하는 성균인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입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인권침해의 유형

1.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결혼 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및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2.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학업권/연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3.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구타, 가혹행위 등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
- 모욕, 폭언, 욕설 등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술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주는 행위

5. 학업권/연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적 심부름, 학사 상 권한남용, 자퇴 강요 등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변경,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

①

도와주세요!



①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②

싫어요!



② 나의 안전 확보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즉시 표현하고, 가능한 한 가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③



③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기관에 도움을 구합니다.

2

의

義
義

성폭력 없는 성균관을 위한 유생들의 한 걸음

마땅히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며 행동하는 성균인

또 다른 인권침해, 성희롱과 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성희롱을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3호」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행위인 강간 외에도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유포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거부함에도 그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기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학내에서 주의해야 할 성희롱·성폭력 사례

- 교수 - 학생 간 : 강의 중 또는 공적·사적 술자리에서 음담패설, 외모비하 등의 언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경우,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학점 및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학생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등의 행위
- 선배 - 후배 (혹은 동기) 간 : MT, 새내기 새로배움터, 축제 등의 각종 학교 행사와 강의실, 동아리, 회식 장소 등의 공적·사적 성격을 불문한 장소에서 상대방이 허용하지 않은 음담패설,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접촉, 추행 혹은 준강간, 강간 등의 행위
- 기타 :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남·여성 휴게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 술에 취한 동료 또는 학우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희롱 · 성폭력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성희롱 ·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상황 파악하기

나에게 발생한 상황이 성폭력 범죄인지, 혹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그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경우, 해바라기센터(증거확보 및 의료적 지원), 성폭력상담소, 교내 인권센터 및 카운슬링 센터 등 전문기관 (혹은 총학생회나 단과대 측)에 피해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내가 겪은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원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 미리 생각하기

신고하기 전,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신고 후 사건이 나의 일상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사건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체력 등 자신이 해당 일에 대해 해결하고 싶은 방향 뿐만 아니라 주변의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대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성희롱 · 성폭력의 가해자로 문제제기 받은 경우]

1. 고의가 없어도 성희롱 · 성폭력의 피해는 일어날 수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사건의 내용(사건 경위, 피해자 신상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만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남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가 되었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이 주변에서 발생한 경우]

1.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서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방식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과민 반응을 한다'거나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건을 노출하며 소문을 내는 등의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비난과 관련된 사건의 노출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근절 위한 모두의 노력

- 학교 생활 및 행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언어 사용에 대해 주의합니다.
- 타인과 명시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동은 삼가고, 명시적 동의와 합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묵시적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 특정한 성을 비하하거나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나 행위 등을 고착화, 일반화된 성의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합니다.
- 학교 생활 및 행사 기획 인원은 필요에 따라 성별 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설정 및 활동의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거나 피해 상황을 겪을 시 교내 인권센터나 카운슬링센터, 교외 해바라기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란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몰래카메라와 불법 촬영의 차이

‘몰래카메라(몰카)’라는 용어는 장난이나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 소재를 말하며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짓지 않는 개념입니다. 2017년, 기존 ‘몰래카메라(몰카)’라고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 촬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범죄 행위인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범죄를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불법 촬영]

- ①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나 관할 경찰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조력 프로그램 등에 바로 신고합니다.
 - ② 설치된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③ 가해자의 휴대전화 기종이나 인상착의 등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합니다.
- **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법 촬영]



[유포 피해]

- ①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②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나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 ③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만일,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 현행범 상 합의 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이라도 촬영과 유포는 다른 행위이기에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유포 피해]



[유포 협박]

- 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②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합니다.
- ** 경찰서는 관할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거주지) 경찰서,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거주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유포 협박]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기관명	세부사항	
여성긴급전화	연락처	1366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지원내용	전문 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법률 기관 등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	02-735-8994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연락처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상담시간	평일 13:00~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락처	02-338-5801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
한국여성의전화	연락처	02-2263-6464,5 / hotline@hotline.or.kr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지원내용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연락처	02-335-1858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지원내용	전문 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기관 등 연계



3

예

禮

유생들의 즐거운 주도 문화

예절을 지키며 풍류를 즐기는 성균인

음주는 적당히!

학우 여러분 모두 각자의 주량에 맞추어 음주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음주 경험이 적은 신입생은 자신의 주량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하며,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의 술자리를 주량을 시험할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합니다. 재학생들은 신입생에게 술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주량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주량을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량은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숙취를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을 뜻합니다. 행사 후의 술자리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에, 스스로 피로를 느끼거나 자신의 주량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시 음주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행사의 진행자들은 학우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이끄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술자리는 자유롭게!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음주를 거부하거나 절제하고 싶어하는 학우에게 음주를 강요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술자리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만나게 되는 첫 자리이기에 재학생들은 음주와 관련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자유로운 분위기는 술과 관련한 의견(거부나 절제의 의사표시)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고, 술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술자리 분위기를 깨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으며, 학우의 잔에 술이 남았을 때 잔을 강제로 비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술게임에서도 소수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게임을 진행하지 않으며, 술게임 참여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성균관의 학우들을 만나게 되는 신입생들의 모임 관련하여 신입생들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언행과 행동을 신중히!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무심코 벨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우들은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유의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는 음주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언행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우들은 명시적인 거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거부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새내기 새로배움터 내의 과도한 음주와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신입생, 재학생들이 크게 다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미성년자에서 막 벗어나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과음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선배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재학생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유의하며, 나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전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와 관련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음주를 하도록 하며 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학우는 이 점 유의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음주 시 지켜야 할 사항

① 자신의 주량 지키기

- 자신의 몸 상태 파악하기
- 자신의 주량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않기
-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하지 않기

② 술 강요하지 않기

-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술자리 분위기를 깨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기
- 술을 원샷하게 하거나 밑잔을 남기지 않도록 강요하지 않기

③ 물 자주 마시기

- 술 한 잔당 물 한 잔씩 마시기

④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 의사표시 확실하게 하기

- 자신이 술을 마시지 싶지 않을 경우 확실하게 거절 의사 전달하기
- 상대방이 술을 거절할 시, 의사 존중하기

⑤ 빈속에 술 마시지 않기

- 음주 시 안주와 물을 술과 함께 적당히 섭취하기

음주 시 주의해야 할 언행

1. 특정 2인을 연인 관계로 몰아가는 행위

- 우정샷 및 러브샷 강요
- 흑기사 및 흑장미 강요
- 기타 특정 2인을 연인 관계로 몰아가는 행위

2.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

- 러브샷 권유
- 산 넘어 산 게임
- 나이스 바디
- 기타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

3. 누군가에게 일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강제로 춤이나 노래를 시키는 행위
- 귀여운 표정이나 몸짓을 강요하는 행위
-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당사자가 곤란을 느낄 수 있는 행위

4. 직위, 성 등 어떤 특징을 이유로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 선배사랑, 동기사랑, 표면장력 등
-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
- 기타 어떤 특징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5.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행위

- 장애를 비하하는 단어 사용
-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비하하는 언행
- 특정 지역, 학교를 비하하는 언행
- 과도한 정치적 신념이나 감정 표현
- 피부색, 국적, 인종 등을 비하하는 언행

6.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 학우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는 행위
- 상대의 동의 없이 외모를 평가하여 칭찬하거나 비하하는 언행



4
지

智
智

유생들의 바람직한 교우관계와 안전한 학교생활

모든 인권의 동등함과 소중함을 아는 성균인,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줄 아는 성균인

성균인은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종류

1. 평등한 관계

모든 학우는 모든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명심합니다. 학번, 나이, 출신 지역,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2. 폭력 없는 관계

모든 학우는 일체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절대 금합니다. 나이, 학년, 기수 등으로 권력과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폭력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합니다. 강요도 폭력의 한 종류임을 인지하고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에브리타임 등의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도 상호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3. 소외 없는 관계

모든 학우는 대화 혹은 활동에 있어 특정한 행위나 생각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지양해 개인 또는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가치관, 선호, 외모 등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4. 혐오 없는 관계

모든 학우는 소수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의 특성일 뿐인 것들에 대해 결함인 듯 표현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5. 선을 지키는 관계

모든 학우는 처음부터 친근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감한 정보보다는, 취미나 학교생활과 같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로 신뢰를 쌓도록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내 기관

기관명	세부사항
카운슬링센터	<p>카운슬링센터는 학우들이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상담기관'입니다. 각종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담사와 1:1 개인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p>
	<p>연락처 인사캠: 02-760-1290 자과캠: 031-290-5260</p>
	<p>위치 인사캠: 다산경제관 1층입구 32107호 자과캠: 복지회관 3층 04209호</p>
	<p>홈페이지 http://scc.skku.edu/</p>
인권센터	<p>인권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신고 접수 및 사건 조사, 피해자/가해자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p>
	<p>연락처 인사캠: 02-760-1299 자과캠: 031-290-5682</p>
	<p>위치 인사캠: 다산경제관 3층 32327호 자과캠: 복지회관 3층 카운슬링센터 내</p>
	<p>홈페이지 http://helper.skku.edu</p>
	<p>이메일 helper@skku.edu</p>

입학식, 새내기 새로배움터, 대동제, ESKARA 등과 같은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이동 시 매너

공연, 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하고, 질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출입 시 안전 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통제선을 잘 지켜 질서 있게 이동하고, 이동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 합니다. 관람석이 아닌 곳에 앉지 않으며, 옥상, 가로수, 담벼락 등에 올라가 관람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상 상황 시 대피하여야 할 때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있게 이동해야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부터 먼저 차례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대처요령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출입 경로를 판단 후 움직여야 하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찾아서 대피합니다. 연기가 많이 찬 곳은 자세를 낮춰서 이동하고,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호흡을 짧게 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문의 손잡이를 열어야 한다면 반드시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해본 후 열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이 발생한 경우 흔들림이 멈추기 전까지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이때 건물 내부에 있다면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탁자 밑이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만약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건물, 가로등, 전선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119에 신고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대처요령

응급상황 중 가장 위급한 것은 갑자기 심장이 멈춘 심장마비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심폐소생술(CPR)의 올바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응의 확인 및 신고

환자가 있는 곳의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의식을 확인한다. 이때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2. 가슴압박

환자는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히고, 양 젖꼭지를 잇는 가슴 중앙부에 깎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팔꿈치를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속도는 분당 100~120회, 깊이는 5~6cm로 30번 반복한다.

3. 기도 열기

이마를 한 손을 댄 채 뒤로 젖히며,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 턱의 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유지한다.

4. 인공호흡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로 잡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하고, 1회 호흡량은 가슴이 올라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다. 이후 입과 코를 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1회당 약 5~6초, 분당 10~12회 실시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5.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도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환자의 옷을 벗기고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부착한다. 이때 부착 부위에 땀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은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이후 제세동 에너지가 충전되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인권복지국

仁義禮智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여 조심하는 성균인

마땅히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며 행동하는 성균인

예절을 지키며 풍류를 즐기는 성균인

모든 인권의 동등함과 소중함을 아는 성균인.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줄 아는 성균인

책자디자인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SURE! 디자인홍보국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SKKU)

SURE!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